##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081

발의연월일: 2025. 4. 24.

발 의 자:이만희·서천호·김기웅

강선영 · 엄태영 · 김소희

구자근 • 김상훈 • 권영진

이종배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(이하 "방역본부")를 설립하였으며, 방역본부는 같은 법 제9조제6항의 각 호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방역본부는 정부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산업 발전, 국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에 따라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9조제8항에 의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그런데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기관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.

이에, 축산업 발전 및 국민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방역본부 운영에

필요한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방역본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법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9조제8항).

법률 제 호

##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8항 중 "제6항의 사업 수행에"를 "방역본부의 운영 및 제6항의 사업 수행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조(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)	제9조(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)		
① ~ ⑦ (생 략)	① ~ ⑦ (현행과 같음)		
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제6</u>	⑧ 병		
<u>항의 사업 수행에</u> 필요한 경비	역본부의 운영 및 제6항의 사업		
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	<u> 수행에</u>		
있다.			
⑨ ~ ⑪ (생 략)	⑨ ~ ⑪ (현행과 같음)		